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 종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제11조 및 별표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공사를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아파트·연립주택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로 정함.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의 범위(제14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로 정함.

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 및 별표 7)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 또는 에너지관리 등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기술인력 및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및 디지털압력계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

◉대통령령제306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제37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으로,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를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으로, “인가 및 신고의 수리”를 “인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합회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표의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처분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별표 5 제1호 표의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의 과징금의 액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60 720 1,080 540 1,0801,620	360 720 1,080 540 1,0801,620	360 720 1,080 540 1,0801,620		360 720 1,080 540 1,0801,620		360 720 1,080 540 1,0801,620	

별표 6 제2호더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50	50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연합회가 진행

중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2021년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를 위한 공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장관 **문 성 혁**

◉대통령령제30621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위판장”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으로,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를 “양륙(揚陸)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판장을”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판장”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판장”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위판